

보험사기 시점, 계약 체결 당시 아닌 보험금 수령시

보험법, 태아 상해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상품 재설계, 상품 명칭을 변경해야”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0세→65세

지난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됐다. 또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돼 태아보험의 보장범위가 출생 전 태아의 질병·상해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보험연구원은 9일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선고된 판결들 중 보험산업, 보험법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을 선정해 그 내용과 의의, 문제점, 향후 과제,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지난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대법원은 1989년 이후 변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구분	사건번호	쟁점
1	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60세→65세)
2	대법원 2019.3.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격 인정
3	대법원 2019.4.3. 선고 2014다2754 판결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보험금 수령 시)
4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약관과의 관계
5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임원배상책임보험 면책약관의 해석과 명시·설명의 의무
6	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구상금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
7	대법원 2019.5.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시 기왕증 고려 범위
8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병명미확인 건강이상 포함)

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한다. 이는 사망·후유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일실향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

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됐다. 이러한 개정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동차보험 외에 다른 배상책임보험약관도 약관 개정,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청약서 등에 '태아'가 피보험자로 명시돼 있다면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태아보험'이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와 그로 인한 후유장애도 보장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민원·분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황 연구위원은 "대법원이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태아보험은 태아의 상해 및 후유장애도 보장하는 것으로 상품을 재설계하거나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상품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 시점에 기수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에 기수가 된다는 점에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보험계약사기'는 보험계약 체결 시(또는 해지권이나 취소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될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기망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닌 보험

금 수령 시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한다고 봤다. 보험계약사기도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보험금사기와 보험계약사기 모두 보험금 수령 시에 보험사기 기수가 성립된다고 본 것.

황 연구위원은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구속받지 않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대상(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격의 20%를 초과할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험자에게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해 위 약관 규정을 근거로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올해도 힘들다… 은행 구조 개선해야”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취약기업 부실리스크 증가 예상

올해 글로벌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기반과 구조를 개선하고, 디지털금융 역량을 강화해 비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펴낸 '2020년 은행산업의 경영환경과 주요과제'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분쟁 ▲중동지역 긴장고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글로벌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

조가 지속되면서, 취약기업의 부실리스크가 증가하고 은행의 순이자마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이같은 경영환경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의 핵심 경영과제로 ▲수익구조의 개선 ▲수익기반의 글로벌 변화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비용 효율성 제고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소비자 보호에 기반한 판매중심의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고, 교차판매·현금관리·자산관리 등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는 경영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美 경기호황에도 저물가… 아마존 효과

한은 필립스 곡선, 90년대 이후 평탄

미국 경기가 잠재 수준을 웃도는 성장세에도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마존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화, 기술 혁신, 정부 정책 등 구조 변화와 특이 요인이 물가 상승을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미국의 저인플레이션 관련 최근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09년 6월부터 확장 국면에 진입했으나 인플레이션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장기목표를 밑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와 고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실업률)에 대한 물가의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 반비례)의 기울기가 1980~90년대 이후 빠르게 평탄화됐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착된 점도 물가상승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미 연준이 지난 2012년 물가목표를 도입한 이후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됐다는 평가다.

전자상거래 확대, 시장 집중도 심화, 기술 발전 등도 물가상승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마존 효과'는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마존 효과란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가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일으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노동 시장에서 약화된 근로자 교섭력이 임금 상승세를 제약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김희주 기자

라임펀드 자산 3.8조… 환매중단 40% 넘어

환매 연기 라임펀드 설정액 1.5조
라임 운용펀드 자산 규모 < 투자금
투자자 원금손실 규모 더 커질 듯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자산 비중이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라임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269개의 순자산은 3조8307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7월 말보다 2조2000억원 가량 적다.

라임을 둘러싼 펀드 수익률 둘러막기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며 운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다 올해 들어 4조원 선 밑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환매가 연기된 3개 라임 펀드 설정액은 총 1조5587억원에 달한다. 라임이 운용하는 전체 펀드 자산 중 약 40.7%가 환매 중단된 셈이다. 여기에 추가로 환매 중단 우려가 제기된 다른 펀드까지 고려하면 총 1조6679억원(43.5%)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들 펀드의 중간 실사 평가 결과 예상손실률은 40~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의 자산 규모는 투자금보다 적은 상태가 됐다. 지난 6일 라임 전체 펀드의 설정액은 4조884억원으로 순자산보다 2057억원 많다. 투자 원금인 설정액이 운용 결과에 따른 현재 실질 가치인 순자산보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7일 통보받은 실사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환매가 중단된 2개 펀드의 자산별 평가가격을 재조정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늦은 오후 환매 연기 펀드인 '테티스-2호'와 '플루토 FID-1호' 실사 결과를 담은 회수 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라임자산운용에 전달했다. 실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에 각 자산별 회수 가능한 금액을 범위(Range) 형태로 제공했다. 가장 늦게 실사를 시작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는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송부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사 중간 평가 당시 50% 이상 회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률이 40%에서 45% 정도로 나올 것 같다"며 "개별 자산에 대한 미세조정이 필요할 테니 가격 산정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자산은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에 먼저 향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그 이후에야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라임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5000억원, KB증권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700억원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판매사 16곳, TRS 증권사 3곳과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와 분배 등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TRS 증권사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조건 없는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증권사들이 6800억원의 TRS 계약액을 먼저 회수하면 투자자들의 손실률은 더 커지게 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라임 TRS 증권사 임원들을 만나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입장을 들었다.

만약 펀드 손실률이 40%라고 가정할 경우 환매가 중단된 펀드 자산 1조5587억원은 9400억원 수준으로 줄게 되고 여기에서 증권사들이 6천800억원의 TRS 계약액을 먼저 회수하면 펀드 자산은 2천600억원만 남게 된다.

라임과 금융권, 판매사들은 자산 회수와 펀드 관리에 속도를 낼 준비를 마쳤다. 라임은 3개월 여간 공식이던 운용총괄대표(CIO)에 문경석 전 삼성자산운용 패시브운용본부 상무를 내정했다. 금융감독원과 라임 환매 중단 펀드 판매사들도 협의를 위해 각각 감사역 2명과 관리 직원을 파견한다.

/송태하 기자 alvin@